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91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신설	3
2.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 폭행 또는 상해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	7
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처분 근거 신설	12
4.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시 자격 재취득 제한	18
5. 과태료 상향 및 신설	22
※ 참고자료	26
1.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처리과정	26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1.
3. 회 부 일 : 2025.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Ⅲ. 검토의견

1.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함)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¹⁾은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 23호에서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미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아이돌봄미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기관의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아이돌봄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보고되어 조치가 취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해진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80건에 달하는데, 서비스기관은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연계를 중지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음.²⁾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및 조치 건수 >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활동정지	5	9	11	6	18	49
자격정지	5	5	4	7	3	24
자격취소	-	1	6	-	-	7
합계	10	15	21	13	21	80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서비스기관이 신속하고 책임성있는 대응을 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신고 주체를 ‘서비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는 신고의무를 각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법률 간의 일관성 및 신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2) [참고자료 1]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처리과정

신고의무 주체를 ‘서비스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과 같이 신고대상에 ‘수사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2025. 4. 22. 동 법의 일부개정으로 2026. 4. 23. 시행예정인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면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고주체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그간 사업 지침상으로만 존재하던 서비스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다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해당 사항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수정하고, 지정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기관까지 포함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 폭행 또는 상해 행위시 제재처 분 강화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제재수준을 현행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호가목 삭제 및 제33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①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 마. (생략)	1. ----- ----- <u><삭 제></u>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u><신 설></u>	2. ~ 4. (현행과 같음) <u>② (생략)</u>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u><신설></u>	1. ~ 7. (현행과 같음) 8. <u>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u>

현행법 제32조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무적 자격정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해당 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무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3조제2호는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3호의3까지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면서³⁾, 행위의 정도가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에는 제32조에서 자격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자격취소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자격취소는 직업자유의 침해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⁴⁾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장애인 학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장애아 돌보미로로서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의

-
1. (생략)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 7. (생략)
 -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
 -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정도에 이르지 않은, 즉 처벌을 받지 않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애아 돌보미 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⁵⁾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다른 자격의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전제하지 않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만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법제처는 현행법상 다른 위반행위 및 다른 자격의 유사 위반행위와의 형평

5)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성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자격정지 사유를 취소사유로 강화하는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처분 근거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아동학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등의 경우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활동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생략) <u><신설></u>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1년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u> 1. <u>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u> 2. <u>그 밖에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u> 3. <u>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u> 4. <u>그 밖에 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유</u>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는 서비스기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3회 이상),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3회 이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⁶⁾를 거쳐 아이돌보미에 대한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활동정지는 아이돌보미의 직무(돌봄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상 정직(停職)처분을 의미함⁷⁾.

< 아이돌보미에 대한 활동정지 기준 >

○ 사유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필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의 준수사항 위반
-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3회 이상)
- 복수의 이용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 반복(3회 이상)
- 친인척(4촌 이내) 연계 또는 웃돈 요구, 부정수급 공모 시(환수조치 대상)
- 돌보는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6) 조정위원회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 간에 발생하는 갈등, 이견 등에 대한 개입·조정 기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나 이용자의 이용제한, 보조금 환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전절차로 규정되어 있음.

○ 구성 : 서비스제공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간부급 직원,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관내 보육·아동학과 교수, 연구사 등), 아이돌보미·이용자 측 대변인 등 3~7명

* 서비스제공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은 필수 참석 대상

**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본인은 사실관계 등의 소명을 위하여 위원회 출석 가능

○ 결정사항 :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이용자에 대한 이용중지 등 제재 및 금액환수 등에 대한 사항

○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에게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제재인 경우 이용자에게도 결정 내용 통보

(출처: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07)

7)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06

○ 기간 : 최대 6개월 이하로 활동정지 기간 결정

○ 절차 : 조정위원회 개최

-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시 사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구성 : 서비스제공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간부급 직원,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관내 보육·아동학과 교수, 연구사 등), 아이돌보미 측 대변인 등 3~7명

* 출처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과 각 서비스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의심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서비스기관이 신속히 개입하도록 하여 서비스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현행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⁸⁾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무관리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활동정지를 서비스기관이 할

8)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같은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서비스기관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및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봄.

셋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9)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1년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에는 6개월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기관인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게 최대 1년간 활동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와 달리 활동정지의 권한은 민간기관인 서비스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기

9) [참고자료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반한 사적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활동정지는 아이돌보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활동정지 사유인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제2항제2호)’ 및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제2항제3호)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행하는 활동정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활동정지의 사유가 판단여지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임.

법제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간의 사적 계약관계에 따른 활동정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활동정지 사유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그 밖에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그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취업규칙 상 징계처분인 활동정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공공연대노조에서는 아동학대 판단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이용가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이돌보미의 부적합한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활동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활동정지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시 자격 재취득 제한

개정안은 자격이 취소된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자격 재취득 제한)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후 재취득 제한은 제6조¹⁰⁾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음.

-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법 제6조제9호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각 호의 자격취소 사유 중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제6조제7호,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 20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동 기간동안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음.

< 현행법상 자격취소 사유별 결격기간 >

제33조 자격취소	제6조 결격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u>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2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u>2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3조 자격취소	제6조 결격사유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은 결격사유와 별도로 자격취소 시 재취득을 금지하는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현행법 제6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자격취소의 사유와 그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자격의 재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은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없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¹¹⁾.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 제6조제9호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 재취득 제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11)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전원재판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전원재판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5. 과태료 상향 및 신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서비스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7조(과태료) ① ----- ----- <u>1천만원</u>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²⁾은 아이돌보미 명의대여 및 명칭사용 금지 등 위반, 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 위반,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거부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12)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있음.

개정안은 서비스기관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안 제13조제8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¹³⁾은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 관계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서비스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법률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일괄하여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각 위반행위의 경중 및 입법례,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유사입법례 >

제 명	처분 사유	벌칙 또는 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우선보육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진술 거부, 거짓 진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의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의 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장애아 돌보미의 명의 또는 수료증 대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제출·보고 거부, 조사·검사의 거부·방해·기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 입소 위탁의 거부	50만원 이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의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 제출·보고 거부, 거짓 자료 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복지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의 사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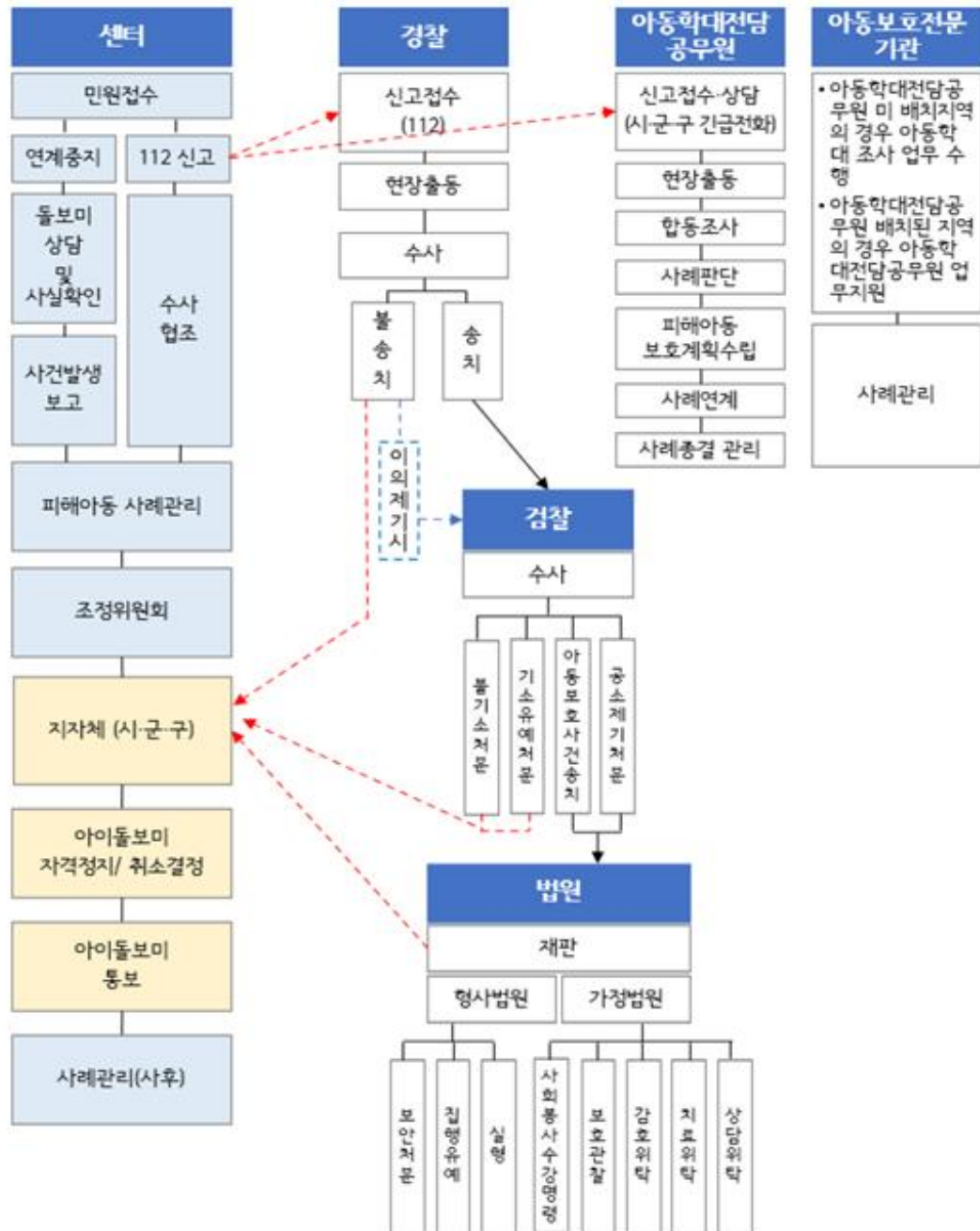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었으므로, 국가자격에 관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 시 처리과정



※ 시·군·구는 검찰 송치, 불송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시·도와 여가부에 보고

※ 출처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참고자료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자격정지 기간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법 제32조제1호가목	3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헐박한 경우	법 제32조제1호나목	2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2조제1호다목	2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호라목	1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	법 제32조제1호마목	1년
바.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32조제2호	2년
사. 법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호	6개월
아.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법 제32조제4호	6개월